
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
2025년도 투명성 보고서

2026. 1.

무빈텍 주식회사

『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
제64조의5 (투명성보고서 제출의무 등)에 따라 정보통신
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
투명성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.

2026년 1월 12일

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에 관한 2025년도 투명성보고서

1. 일반현황

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	무빈텍 주식회사
대표자	비공개
정보통신 주요서비스 / 3개월 일일평균이용자	커뮤니티 / 10만명 이상
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연평균 매출액	비공개
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	비공개

2.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노력

1)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

-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유통방지책임자가 확인하고결제함.
매년점검함.

무빈텍 주식회사
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

〈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내부결재 〉

[제. 개정 이력]

순번	구분	시행 일자	제정. 개정 주요내용
1	제정	2022. 06. 02	신설
2	제정	2023. 06. 03	갱신 및 확인
3	제정	2024. 06. 07	갱신 및 확인
4	제정	2025. 06. 09	갱신 및 확인

2025. 06. 09

결재자: 비공개



2) 불법촬영물등 신고기능 마련

○ 신고기능 마련

- 온라인 신고 페이지 : https://www.fmkorea.com/report_form

· PC



· MOBILE

○ 신고처리 전담부서 운영

- 에펠키리아 고객센터 및 신고센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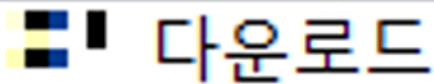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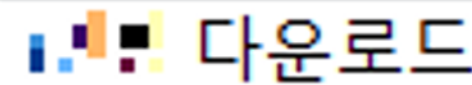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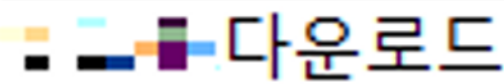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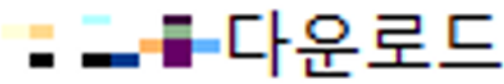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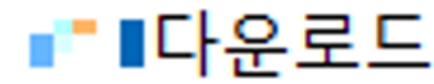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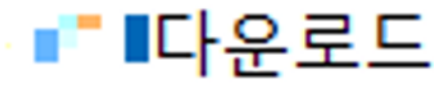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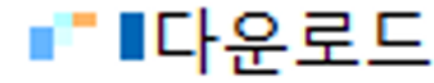
· help@fmkorea.com

3) 불법촬영물등 검색 제한 조치

○ 불법촬영물등 검색결과 송출 제한

	A	B	C
1	 다운로드		
2	 다운로드		
3	 영상		
4	 다운로드		
5	 유출		
6	 판매		
7	 다운로드		
8	 다운로드		
9	 다운로드		
10	 다운로드		
11			

○ 불법촬영물등 연관검색어 등 제한

	A	B	C
1			
2			
3			
4			
5			
6			
7			
8			
9			
10			
11			

- 검색어 노출 제한

· PC

⚠ 불법촬영물 및 불법음란물 등을 공유할 시에는 이용정지와 자료 삭제 뿐만 아니라 관련법에 의거하여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2조의 5 제1항에 따른 삭제·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「성폭력처벌법」 제14조 「청소년성보호법」 제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· MOBILE

4)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

○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 필터링 적용

순번	서비스명	필터링 적용	적용 기술	미적용 사유
1	전체 서비스	유	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표준 DNA 모듈	

5) 사전경고 조치 및 로그기록 보관

○ 사전경고 조치 시행

- 모든 글 쓰기 화면에 다음과 같은 사전경고 조치 표기중



○ 로그기록 보관

- 법령에 따른, 기술적 조치에 관한 로그기록을 보관 (DNA 정보, 게시글 URL, 날짜)

6) 기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노력

○ 공지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캠페인을 통해 정보성 링크 안내

- <https://www.fmkorea.com/3249536817>

- 기본적으로 불법촬영물뿐 아니라 성인물에 대해 금지조항을 사이트 운영 규정에 넣고 적극적으로 상시 모니터링 및 제재중.

불법촬영물 및 불법음란물 공유 금지, 위반시 형사 처벌 가능

2020.12.09 15:29

공지

댓글 0

<https://www.fmkorea.com/3249536817>

복사

다음 사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:

불법촬영물 및 불법음란물 등을 공유할 시에는 이용정지와 자료 삭제 뿐만 아니라 관련법에 의거하여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2조의 5 제1항에 따른 삭제·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「성폭력처벌법」 제14조 「청소년보호법」 제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관련 사항을 함시 명확하게 인지하실 수 있도록 공지를 지속적으로 게시합니다

그 외에 누드 또는 성행위가 포함된 사진 및 동영상 외에 허용되지 않는 기타 콘텐츠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음란하고 자극적인 이미지
- 성인용 콘텐츠를 포함한 노골적이거나 외설적인 표현
- 성 관련 송고 및 조언
- 페티어 사이트(예: 발 페티어 콘텐츠)
- 성인용 장난감 또는 제품
- 성인용 콘텐츠가 포함될 외부 사이트로의 광고 또는 링크

감사합니다.

3. 불법촬영물등의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

○ 2025. 01. 01. ~ 2025. 12. 31까지의 처리현황

< 신고삭제요청 및 처리결과 통계 >

※ 대상기간 : '25.1.1. ~ 12.31.(신고접수 기준)

구분		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계
신고접수	신고·삭제 요청인	피해자등	-	-	-	-	-	-	-	-	-	-	-	-	-
		기관·단체	-	-	-	-	-	-	-	-	-	-	-	-	-
		소계	-	-	-	-	-	-	-	-	-	-	-	-	-
	신고사유	성적 불법촬영물	-	-	-	-	-	-	-	-	-	-	-	-	-
		성적 허위영상물	-	-	-	-	-	-	-	-	-	-	-	-	-
		아동청소년 성착취물	-	-	-	-	-	-	-	-	-	-	-	-	-
처리 결과	삭제·접속차단		-	-	-	-	-	-	-	-	-	-	-	-	-
	방심위 심의요청	삭제·접속차 단	-	-	-	-	-	-	-	-	-	-	-	-	-
		각하·해당없 음	-	-	-	-	-	-	-	-	-	-	-	-	-
	소계		-	-	-	-	-	-	-	-	-	-	-	-	-
비고															

4.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에 관한 절차

○ 관련 규정

- 관련 규정

불법촬영물의 정의 불법촬영물이란 불법성 게시물의 일종으로, 특히 "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(약칭: 성폭력처벌법)"과 "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(약칭: 청소년성보호법)"에서 제작과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동영상 등의 게시물을 말합니다.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될 경우 불법촬영물 등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, "전기통신사업법" 및 "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(약칭: 정보통신망법)"은 사업자들에게 신고 등을 받아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불법촬영물 등에는 다음과 같은 게시물이 있고, 그 자세한 내용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각 호 및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 제1항 각 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 ②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(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)에 반하지 않았어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 허위 영상물 ③ 유통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·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·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·합성 또는 가공한 것 ③ 편집·합성 또는 가공할 당시에는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·영상물 또는 음성물 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의 정의 아동·청소년 또는 아동·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등 성적 행위("아동·청소년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·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도 포함")를 하는 내용이 표현된 것 성적 불법촬영물 신고 신고 가능 사유: -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) -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(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 또는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) 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)로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·판매·임대·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·상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)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 요청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상세 사유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등이 필요합니다. 아래 서식을 help@fmkorea.com 이메일로 접수 바랍니다.
--

○ 신고 삭제요청 처리 프로세스

- 신고 삭제요청 처리 프로세스

1. 신고, 삭제요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

- 신고·삭제 요청을 모든 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하단의 문의/신고 게시판 통한 전자 문서 및 help@fmkorea.com 이메일 주소로 가능, 홈페이지 글 마다 모두 있는 신고 기능 통해 접근 가능
- 접수 방법에 대해서는 help@fmkorea.com 이메일 통해 삭제 요청서가 권장됨

- 불법촬영물 신고 등 안내 페이지: https://www.fmkorea.com/report_form

- 접수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별도 추가 확인 없이 지체 없이 삭제하고 유포자를 차단, 유통방지 책임자에게 보고할 것

다만, 불법 촬영물이 아닌 것 같은 경우에는 유통방지책임자에게 전달 및 심의요청

- 접수에 대해 24 시간 이내에 심의 및 처리

-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를 한 자에게 그 처리 결과를 신고·삭제요청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통보, 추가 문의 필요한 경우에 대해 help@fmkorea.com 이메일 주소를 안내

- 만약에 허위 요청이 강력히 의심되면 별도로 유통 방지 책임자에게 문의, 일반적으로 요청 오면 추가 확인 없이 모두 삭제 및 유포자 차단

- 처리 결과 3년 동안 보관, 유통방지책임자가 기록 및 보관

○ 기타 운영관련 사항

- 유통방지 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시한다.
- ①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기술적 조치를 위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시스템이 항상 운영될 수 있도록 일일 점검과 관련 인원에게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.
- ②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기술적 조치의 운영·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, 관련 로그기록을 3년간 보관한다.
- ③ 신고기록목록을 작성하고, 불법촬영물 등 유통 신고서 및 처리결과에 관련된 문서를 3년간 보관한다.

5.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책임자

구분	성명	부서	직책	지정일
정	비공개	운영팀	책임자	2022-01-17

6.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교육

구분	교육일 (수료일)	교육명	참석자	시간	교육기관
법정교육	2025-08-22	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	책임자	2시간	방미통위

발급번호 : 2025-11-082-0002

교육 수료 증

성 명 :

소 속 : 무빈텍 주식회사

교육과정 :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

교육기간 : 2025. 08. 22. ~ 2025. 08. 22.

위 사람은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
관한 법률」 제44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
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
책임자 교육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2025. 08. 22.



방송통신위원회